

우리는 이것으로

투쟁합니다



펴는 날: 허리잇기 48년 5월 15일

펴는 이: 민족 경복대학교 제7대 자주 총여학생회

史90, 김은주씨!

여는 시

한번 본 너의 얼굴은

김진경

그때에는
누구의 얼굴에나 네가 있었다
누구의 눈동자에나 너의 푸르른 하늘이 서로 손목을 잡으면
하나가 되어 펼쳐졌다
누구나 너를 사랑했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변변히 부르진 못했지만
봄의 벌거벗은 나뭇가지 끝
대담하게 피어나는 목련꽃 속에서
별판으로 달려가는 바람 속에서
거리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너를 보았다

그러나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벗들의 눈동자 속에
헝하게 비어 있는 자리
너의 푸르른 깃쪽은 피문어
찢어져 거리의 모퉁이로 짓밟혀 가고
너를 껴안던 젊은 가슴은
포승에 묶여 끌려갔다
그러나 잊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지막피 한줌까지 빼앗기는 날이 올지라도
한번 본 너의 얼굴은
한번 본 너의 얼굴은
우리 가슴속의 하늘
몇십 년을 기다리고
꿈꾸고 싸우게 한다
이름할 수 없는 우리의 여인이여

++++돌아오는 오월, 승회를 되살리며

자료집을 펴내면서. . .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력이 넘실대는 오월이다. 거리에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있고 풀밭에는 벌레의 울음소리가 경쾌한 오월, 우리들은 그리움으로 잣아든다. 강 경대 열사, 박 승희 열사, 김 영균 열사. 코 끝에 배여드는 아카시아 향기만큼 짙은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 땅을 같이 산 젊은이들이 쇠파이프에, 불길에 목숨을 잃을 때마다 가졌던 아픈 기억이 전신을 타고 흐른다. 그러나 오월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력으로 우리들의 일을 찾아나서는 것! 이 오월은 그런 힘이 있다. 광주의 녀, 민주의 녀이 오월, 오늘 우리의 희망 민주정부를 찾아나서면 7천만 겨레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3. 24 총선이 끝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체 나누지도 못해서 대통령선거로 바쁜 걸음으로 내몰려졌다. 국민들의 심판에 겸허한 반성과 노력은 커녕 한바탕 화려한 쇼를 준비하고 있는 구국의 결단, 민자당! 한동안 '쇼'에 정신이 팔려 있다보니 민자당이 무얼 잘못했는지, 우리들이 승리해도 변화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민자당에 의해 또 다른 허무주의가 고갤 든다. 그들에게 우리의 5. 19를 보여주자. 이미 김 영삼이라 정해두고도 보기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민자당에게 민주정부 수립의 열정으로 눈물을 안겨주어야 할 때이다.

반갑습니다. 7천 여학우 여러분.

보은이와 진판이에 대한 사랑을 안고 인사드립니다. 몇날 며칠 밤을 꼬박 샐습니다. 창 밖 새벽이 어둠을 다 쓰러뜨릴 때까지 푹푹이 자리에 앉아 7천 여학우 한 분 한 분의 힘찬 얼굴을 그리며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7천이 합의하는 민주정부 수립의 한 길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공이 시작되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남은 건 성폭력과 성차별교육, 음란, 퇴폐문화 뿐이었고 내 누이와 내 어머니의 뒷모습이 늘 불안으로 휩싸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같은 여성, 새벽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7천 여학우가 있기에 믿습니다. 보은이와 진판이가 원하는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이 절로 흥겨워지는 민주정부 수립을 일구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더이상의 차별은 거부하고 평등세상으로 힘찬 걸음을 디딤시다.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은 오월, 오늘부터입니다. 민주정부에 대한 합의와 7천 여학우의 씩씩한 실천이 이 순간부터 시작되면 민주정부는 반드시 수립됩니다. 민자당 전당대회가 있는 5월 19일, 7천 여학우 함께 만남시다. 그리하여 올 가을엔 박 승희 학우가 남긴 한반도의 코스모스를 환한 웃음으로 맞읍시다.

글 씬는 순서

1. 여는 시
2. 자료집을 펴내면서
3. 여성지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

— 6 공화국 여성정책을 비판하며

+ 들어가며

+ 가족법 개정

+ 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 영유아보육법

4. 아무도 없는 곳에서
5.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6. 김보은 사건 개요
7.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8. 7천 여학우의 5월 —이렇게 삼시다.

※여성지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

— 6공화국 여성정책을 비판하며

== 들어가며 ==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20C 초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들어섰던,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인 소련방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급속하게 세력을 넓혀 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정치적 지형의 변화 외에도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은 변화를 보여 주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인식은 눈에 뵈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억압 받아오던 여성들의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이제 조금씩의 성과들을 안아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것들은 모두 자본주의식으로 변하는데 유독 여성에 관련된 관념들과 제도들만은 봉건적인 틀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모순과 억압에 항거하는 자연스러운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는 인간 자체를 압박하는 제도이니. .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해가 갈수록 여성들의 자주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 일례로 예전에는 여성의 역할이 가사의 영역으로 한정되던 것에 반발하여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도 경제적인 것 말고도 자아실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여성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수렴하고 지원하는가를 알아 볼 차례이다.

6공화국 대통령인 노태우는 선거공약에서 가족법 개정, 남녀 고용 평등법 이행 등을 내용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내걸었다. 그것의 제도적인 장치로 출생법과 동시에 여성정책을 집중, 총괄하는 부처인 정무 제2장관실을 설치하였었다.

과연 6공 4년간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노태우 정권이 남녀 평등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자.

***** 6공화국에서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정무 제2장관실이 신설되면서 겉으로는 여성지위의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89년 제정, 91년 시행에 들어간 가족법 개정. 87년 제정, 89년 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 91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처럼 많은 일들을 늘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제도들이 까놓고 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주로 법에 치우쳐 내용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데 있어 전체 사회구조와 현실속에서 고민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어떤 형태로 바뀌던 간에 그것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의 투쟁과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속법 개정

후보 ; 89년 12월 제147회 정기 국회에서 대폭 개정된 가족법이 통과되
 므로써 우리는 가정의 민주화와 여성지위 향상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하하.

법제	개정 전	개정 후
호주제도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 장손만이 새로운 호주가 될 수 있음 호주의 권리와 의무로 부양 의무, 분가 강제권 등이 규정.	장남이나 장손이 호주 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음 호주의 권한으로 친족회 소집권 의견 진술권만이 남아 있음
부부의 결합관계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해야 한다.	아내가 친가의 호주이거나 호주 상속인일 때에는 남편이 아내의 가계에 입적할 수 있다.
	남편이 주거를 결정한다.	주거 결정에 있어 동등한 비중을 가지며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결한다.
자녀양육	이혼시 협의가 안 되면 남편의 양육 책임이 인정되어 아내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이혼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며 둘 다 면접 교섭권을 가짐
친족관계	부계 8촌. 모계 4촌.	8촌 이내의 혈족 동성혼 금지규정은 존속

후세 가족법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과 개선 방향

가족법 개정은 계층에서 여성계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새 가족법은 과거의 호주제도를 약간 수정했을 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녀가 평등한 지위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족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며 남아 선호를 부채질하여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호주제도는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가족법에 남아 있는 호주제도와 관련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부부가 평등하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일이다. 성이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는 표지인데, 아버지의 계통만을 표시하는 현재의 남계중심의 성씨제도는 반쪽의 계통만을 표시하는 잘못된 제도이므로 타파되어야 한다. 이미 서구와 일본 등 외국의 가족법에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 중 어느 하나를 갖던가 둘을 합한 성씨를 갖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부 공동 가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민법도 1947년에 호주제도를 폐지했고, 그 후 가족의 성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 또한 부계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학적 근거 또한 미약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은폐되어 있는 새 가족법은 6공화국의 잔존하는 남성우위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한 남녀 평등은 6공 하에서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후부부 별산제

부부 별산제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을 모두 합쳐 공동 소유로 보지 않고 남편 또는 아내 각각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 소유에 관하여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다한 반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기로 삼았던 전통 아래 살았던 우리 여성들에게 이 제도는 여성이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우리의 가족관념 및 경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여분으로 공동 소유 추정을 강화하여 아내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1990년 부분 개정된 사항으로는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 이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증여세 제도 중 일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

1990년에 신설된 조항. 여성의 가정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6공에서 주장하는 이 권리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걸치레용에 불과하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서는 판사의 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되어 지므로 부정당하다.

또한 이때 분할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6공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

이러한 증여세는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을 분할 받아 아내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시 기여분 분할 청구에도 해당된다.

이런 제도들은 부부 별산제와 우리나라 여성 노동의 현실사이에서 여성에게 모순과 억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위의 것들을 아내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폐지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주역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집단이 여성이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ILO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의 절반수준에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여성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속에서 여성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1986년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를 인식한 선심용 공약으로 여성관계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다. 고평법은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에 즈음하여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성차별 현실을 개선하려는 최초의 단행법으로, 특별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전 과정(모집, 채용, 배치 등)에서의 성차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인식한 선심용 제정으로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없이 재빨리만 눈독을 들였으니 급기야 한번도 적용되지 못한 채 89년 대폭 개정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고평법의 제정 배경의 속셈과 개정 전후 비교, 개정 후의 문제점과 그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고평법의 제정 배경과 개정 전후 비교

고평법은 정부여당에서 여성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론과 경제계 반발로 막연히 미루어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단 1회의 정책토론회를 거친 후 제정한 것으로 보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한 정략적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 국제적 체면 치레용으로 6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을 염두에 둔 명분용 입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제정 초기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정시 법안	개정 법안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의 정의가 없어 사업주의 임의 해석 가능	차별 규정 조항 마련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빠짐	동일한 사업에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주도록 규정. 따로 여성만 근무하는 사업 설립 금지
벌칙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 25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 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해결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어 조정에 그치게 됨	분쟁해결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조치의 근거를 제시토록 함

※개정법안의 문제점

1. 고평법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부과나 강제규정이 너무 미약하다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벌칙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보다 벌칙규정이 약하다.

근로기준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평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성차별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고평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제정의도가 여성유화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 1989. 11월 서울 여대협에서 사원모집광고에서 남자로만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도리코, 동아제약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고평법 제 6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성차별 억제 의도가 없음을 반영.
2. 권리구제의 절차가 번거로워 구제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

차별 피해자 : 사업장 내 고충처리 위원회 → 노동관서의 행정지도 → 고용문제조정위원회 → 노사합의 서명등의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의 유용성이 없다.

예) 노동부 집계-4년동안 고평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처리한 것이 9건에 불과. 법적 구속력 없는행정지도 및 질의회시가 70여건 정도

이상을 통해 정부의 성차별 폐지 의지가 어떠한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정부의 고평법에 대한 실천의지나 관심이 부족함은 고평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실시에 따른 특별예산 편성이나 육아시설 확보와 운영을 위한 조치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전담시켜 기업주가 여성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그리고 남녀차별에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성별구분모집 조항이 삭제된 개정 공무원법에 의해 여성의 합격률이 예상외로 높아 91년도 행정직 공무원 시험공고를 내면서 “필요에 따라 성별분리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를 내세워 차등모집을 합리화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6공이 과연 여성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다.

※고용 불평등 극복을 위한 데안

1. 고평법 정착을 위한 예산 투자
2.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 성차별 교육 철폐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고용쿼터제 실시
탁아 활성화와 국고 지원
3. 분쟁처리 절차 간소화
4. 여성의 직업훈련 지원, 강화
5.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성보호 조항

1. 노동시간 (제 56조) :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노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괜찮다.
2. 시간 외 근무 (57조) :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생리휴가 (59조) :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4. 산전 산후 휴가 (60조) : 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단 유급보호휴가는 꼭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어야만 한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경미한 근로로 전환, 시간 외 근로 금지.
5. 육아시간 (61조)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엄연히 법에는 나와 있는 모성보호 조항이 세계최장시간 노동, 세계최대성별 임금격차라는 말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

6공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제정되어 있었지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6공의 여성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유아 보육법

우리나라의 탁아문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산업화 정책과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85년에 41%이던 것이 91년에는 47.2%로 급격히 높아 졌으며 이에 따른 탁아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높아졌다. 육아문제는 모성보호라는 입장외에도 사회의 존속을 위한 절실한 문제이므로 개인의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6공 정부는 87년 대선에서 탁아시설을 확대한다며 공공 탁아소 건립을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올림픽을 겨냥한 88시범탁아소와 탁아기능이 절대 부족한 새마을 유아원 외에는 이렇다 할 탁아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탁아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기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90년 12월 14일,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91년 1월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에서 단적으로 표현되는 6공의 탁아정책은 탁아의 법제화라는 면에서는 의의를 가지나 법과 정책의 기본구조를 볼 때, 적극적 국가지원이 부족하고 책임성없는 과도한 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유아 탁아법이 어찌서 허구적이며 반영성적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

1.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반사회복지법이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탁아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탁아법 3조 2항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같은 법 21조에서는 “비용의 부담” 보호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7조와 22조에서는 “설치와 비용보조”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같은 법조항 안에서도 모순을 빚는 우스꽝스러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다.

92년 추계 보육대상아동이 99만명에 다다르며 그 중 9%만이 공식적으로 보육되고 있음으로 해서 탁아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설치된 비영리 민간탁아소마저 법 32조와 같은 신고에 대한 강제조항(미신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둬으로써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기 위한, 현실에 맞지 않은 설비조항들을 강요하는 등 탄압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 여하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3.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법 29조(검사와 보고)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지도원 임무중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도 포함되어 있어 자율성 침해는 물론 획일화된 강제성을 부여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4. 관주도적이고 행정편의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양자간의 구별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여부 및 그 기준이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입법사항을 행정부에 모두 백지위임하는 것이 되어 “의회 입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법 13조에 보면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데 행정기관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인 운영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안 27조에서는 비용보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은 원래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보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21조에서는 국가의 지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로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타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대상을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6. 직장탁아의 문제점 (설치기준의 비현실성과 강제성 취약)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특히 취업모의 경우, 종사자의 지위는 비임금 근로층에, 직종으로는 생산직에,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일고나 임시고가 많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에 몰려 있다. 실제 탁아를 필요로 하는 25세에서 34세의 연령층에서 10인 이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76.3%에 다다라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또한 규정이 임의조항이라서 강제력이 없으며 비용도 기업주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탁아의 확대는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법을 보았을 때 이 법의 취지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그것도 날치기 통과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고 시행되었으니 얼마 전(92. 2. 12) 노사 토론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금년 탁아사업에 19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난 지금 민자당은 대권다툼에 여념이 없으니 그 실현의지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계정되어야 할 부분 (데안)

1. 보육비; 정확한 조사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부담을 대폭 늘리고 수익자 부담을 줄이며 부모의 소득 여하에 따른 차등보육료가 도입되어야 한다.
2. 지원방식: 지금과 같이 국공립 탁아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지원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전 수탁아동으로 하되 점차 지원비비율을 높여가는 단계설정을 채택해야 한다.
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보호, 육성책이 필요하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사항,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기준 등의 입법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5. 규제적 강제조항과 자율성 침해조항은 지양되어야 한다.
6. 직장탁아의 설치기준을 현실화 하고 적용대상을 높이며 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성폭력 특별법에 관하여

—탈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6공화국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수록 기만적이며 반여성적인 노태우 정권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와 함께 우리가 건설해야 할 여성이 살맛나는 정부의 상이 떠오른다. 성차별 교육이 철폐되어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우게 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올바른 내용으로 실시되어 좋은 탁아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모성보호가 지켜지는, 취업차별이 없어져 여성이 마음껏 평등하고 당당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향락 퇴폐산업이 방지되어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이 실시되어 경제가 살고, 정치가 민주화 되어 양심수가 없어지고 안기부 기무사가 없어지는, 전교조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노동약법이 없어지는,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 환경오염이 방지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바로 민주정부의 상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박재동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가.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 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 (또는 남성) 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계약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통념의 수용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는 강간범이 강간을 하고도 죄의식을 전혀 못느끼고 피해자에게 또 만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같은 성폭력 대처 방식으로는 강간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간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도 가볍게 취급되어 여성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계속 침해 당하는 현 상태가 변화될 수 없다.

다. 잘못된 생각은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생각	올바른 인식
1.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순결을 잃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폭력이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에 대한 것으로 관점을 돌려야 한다.
2. 성폭력을 성기 중심의 강간으로만 본다.	성폭력은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성에게 자행된다. 강간, 강간미수,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추행, 음란전화,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가병론 추행까지도 여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므로 성폭력에 해당한다.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항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p>4. 강간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p>	<p>미국의 경우 강간 피해자들의 나이는 최저 생계 4개월부터 최고 92세에 이르고 있다. LA의 한 강간 센터에서는 6세부터 80세까지의 여자들을 도왔다. 여자들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강간을 조심해야한다.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계층, 이웃 그리고 생활태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p>
<p>5. 대부분의 강간사건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참을 수 없는 순간적 성충동으로 우연하게 저질러진다.</p>	<p>강간범죄가 우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것이 상당히 많다. 즉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강간 피해자의 80%가 아는사람 즉, 친척, 이웃, 직장동료, 선후배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장소에서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은 공격물로 선정, 반복적으로 강간을 하기도 하며 강간은 피해자의 집에서 많이 일어난다.</p>
<p>6.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p>	<p>아니다. 강간은 매우 폭력적이다. 많은 강간범들은 무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다. 그리고 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다. 물론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적'이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p>
<p>7.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하기를 바란다.</p>	<p>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기대한다. 서로의 강제적이고 난폭하며 잔인하고 공포감을 주는 "강간"을 원하는 여자는 없다.</p>
<p>8.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p>	<p>강간범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들 중에는 남달리 포악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강간을 일종의 성관계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남자가 원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여자들은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거절한다고 남자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강간범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p>

<p>9.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p>	<p>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자만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개성이고 고유한 자유이지, 폭력을 당하고 경멸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도 알아야 하지만, 주의하지 않았으니 강간 당해도 그것은 여성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p>
<p>1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p>	<p>그렇지 않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때리거나 무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범죄 앞에서 공포심없이 있는 힘껏 저항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더구나 여성이 수년동안 교육받은 수치심으로 인해 힘껏 저항하기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p>
<p>11.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 강간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p>	<p>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임시방편이지 대책은 못된다. 여성들이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먼저 나의 편견부터 점검하고 이웃에게 강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도록 하자.</p>

<잘못된 통념의 결과>

이렇게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통념의 수용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는 강간범이 강간을 하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을 전혀 못느끼고 피해자에게 또 만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같은 성폭력 대처방식으로는 강간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강간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도 가볍게 취급되어 여성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계속 침해 당하는 현 상태가 변화될 수 없다.

2. 성범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배경

정치경제적 요인

가. 불평등한 분배

성폭력의 폭력성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폭력성에 기인하고 있다. 부의 축적을 최대한의 신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얻어내는 수단인 불평등한 분배가 필연적으로 비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계급계층의 불만이 폭력이라는 범죄를 낳게된다. 이러한 전체 하에서 폭력의 여러 형태중에서 성폭력이 유달리 급증하는 이유는 상대적 열등감, 박탈감에 시달리는 남성들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여성을 선택한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계급 사회에서 그대도 여자쯤은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지배의식에 사로잡힌 남성들은 사회적 지배계층으로부터 받은 폭력을 그대로 여성에게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이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피지배계급의 반항을 무마시키고자 하며 자신들은 축적한 부를 가지고서 여성을 유물로 전락시키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나. 향락 산업의 비대화, 성폭력 문화의 증대

*향락 퇴폐업소가 전국 45만개로 급증

*향락업소의 실제 연간 매출액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
(국민 총생산의 5% 이상 차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

= 15~19세 사이의 여성인구 5명 중 1명이 성적(性的) 서비스 산업에 종사

◆경제적 요인

계벌에 집중된 각종 특혜와 중소기업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구조와 최근의 경기 불황 및 각종 투기 산업에 의한 불로 소득의 증가를 계기로 단시간에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투자 가치가 확실한 향락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요인

일반 국민을 정치에서 무관심하게 비정치화시키는 3S(Screen, Sex, Sport) 정책으로 향락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의 향락 퇴폐적 문화를 단지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향락산업이 팽창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된 광고 선전들이 이를 더욱 자극하고 급기야는 이런 향락, 퇴폐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부족으로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고 있다.

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허위광고 구직자 유혹에 의한 인신매매가 많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이것은 여성의 취업 기회 부족, 저임금, 주변적, 보조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부도덕한 공권력

성범죄, 성폭력을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을 양산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구에서으 경찰에 의한 강간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

가. 남녀 불평등구조와 성별 분업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성의 상품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성의 상품화가 남성의 상품화로 나타나지 않고 여성의 상품화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남녀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확산

가부장제는 좁게는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의 지배와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전반을 가리킨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기존의 성별 분업을 강화. 재생산함으로써 남녀 불평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받아들인다 않느냐에 따라 깨끗한 여성과 더러운 여성으로 여성을 이분화하고 가부장 밖의 타락한 여성들은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을 분열시키고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불가피하게 탈락된 부적응 학생들을 양산하고 이는 문체청소년의 구조적 생성이라는 문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강간의 43%가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생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비인간적인, 반인륜적 상흔, 인간을 수단화하는 목적과 단의 전도현상 등은 모두 물질 만능주의가 지나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의식 부재 현상을 낳았다.

나. 가부장적 남성문화의 도덕적 타락

남성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강간, 성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풍토, 돈으로 여성을 사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풍토, 여성을 이문화하려는 풍토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2중적 성규범의 문제

남성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당연하다는 외도문화, 매춘문화가 허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정조가 중시되는 이중적 성규범의 문제이다. 특히 여성에 대해 육체적 순결만 중시하는 잘못된 정조 관념이 있는데 이는 가정파괴법, 인신매매법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여 폐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조관념으로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라. 비뚤어진 이기주의

나와 내 가족만 잘되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가족 이기주의적 생각이 인신매매, 강간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하는 요인이 된다.

상호작용적 요인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가족, 매스컴, 제도교육 등에 의해 강화, 재생산된다. 먼저 가족에 의한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성별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남녀 차별적 성역할 구분이 습득되며,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폭력,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인간교육, 윤리교육, 공동체 의식교육이 부재한 입시 위주의 제도교육을 통해 경쟁위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양산되는 것이다.

사회통계의 문제

성폭력에 대한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법 내용 자체와 법의 실제 적용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법은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하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 의제강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면.

가.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① 성폭력 관련법의 이름 문제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의 문제는 정조의 문제이기 이전에 폭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성폭행' 또는 '성범죄'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꿈으로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정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폭력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정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했음을 확실히 인지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는 행동을 삼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덜어주어 신고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② 성범죄의 구성요건 문제

현재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 .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 '부녀자에게' 그리고 '간음'이 강간의 구성요건이 된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해석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했으나 저항으로 극복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 피해자의 저항이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강도가 들어 왔는데 저항하지 않았고 물건을 내주었다고 했을 때 강도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 강간 등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의를 개념은 '말이나 행동 몸짓 등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로 확실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규정이 '말이나 행동 몸짓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로 규정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보다 유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간음'의 규정은 '여성성기에 남성성기가 삽입된 것'을 기리키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성성기에 의한 임신 가능성과 그것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끼칠 영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가부장적 회에서 여성이 남성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성기 삽입뿐만 아니라 더 나쁠 수 있는 이물질 삽입 및

성적 접촉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녀자에게'라는 규정은 성폭력의 대상을 남성 아닌 여성에게만 국한시키는 문제가 있다. 먼저, '부녀자에게'라는 규정은 성폭력을 남성이 여성에게 국한시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폭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심각한 성폭력 범죄인데 이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의 대상을 '부녀자에게'라고 한정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라고 성별 구분을 없앨 필요가 있다.

넷째, '부녀자에게'라는 규정은 또한 아내를 강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가 된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성폭행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강간을 폭력범죄로 보지 않고 간음 즉 성관계로 보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강간을 폭력 범죄로 본다면 그것은 대인(對人) 범죄이고 그 상대방은 가해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않는 것처럼 성폭력에 있어서도 아내 남편 등 배우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강간 또는 배우자강간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있는 보호소의 설치 등 사회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친고죄 규정 문제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강도강간과 집단 성폭력 운간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즉 제3자는 신고할 수 없고 피해자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순결, 정절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서 볼 때, 신불 때,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수치감과 피해만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의 실제 효과는 남자는 자유로운 성, 여자는 정절, 순결이라는 이중적 성문화를 더욱 조장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중시키고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성폭력 범죄의 등급화와 함께 친고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 된다. 조사결과에 하면 실제로 많은 여성들(73.5%)이 친고죄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공소 시효가 너무 짧음

대개의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건을 덮어두고 잊고자 하며 심한 정신적 갈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린다. 더욱기 어린이 강간의 경우 자신이 당한 일을 단지 '무서운 일, 끔찍한 일'로 인식하고 사춘기가 되어서야 그것이 성폭행이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상황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지게 되므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든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의 고소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16세 이하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조항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는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증거 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제한을 없애고 피해자 진술을 우선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나. 성폭력 관련법 집행상의 문제

법 집행에서는 기소율의 증대와, 형량의 조정, 재판시의 피해자 보호가 요구된다. 실제 고소율이 2. 2%에 그치는 데다 그중 1/3만 기소되며 실형 선고를 받는 것도 1/3이다. 또한 대개 징역 1-3년에 처해져서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형량이 극히 가볍다. 법조인들도 성차별 의식을 가지고 성폭력을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하여 처벌받아야 할 사건들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 불기소, 무죄판결,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 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통계기관의 잘못된 통계를 깨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하루아침에 이루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여성경찰 여성검체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피해자들에게 또한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한다. (삼입시간, 삼입후 느낌. . . 실제로 김보은 사건의 1차 심리 공판에서 검사가 '의붓아버지와 관계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나?' 등의 질문으로 김보은양을 다시 한번 죽이는 태도를 보였다.)

다. 전략적 통계의 문제

① 시국사건으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상황

② 성범죄 관련 단속이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③ 성차별적 통계-남성이 수요자이고 여성이 공급자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나,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강간법이나 그 적용은 여성들에게 초점을 두고있다. 또한 강간은 강도보다 강력범죄이고 윤락행위는 고객과의 계약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후자의 기소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가 선택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준다.

3.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 대안

이렇게 성폭력이란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이의 해결과 대안 또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보다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구해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92년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민주정부 속에서 이루어질 민주대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되

가. 경제적 차원

- ①분배구조개선, 저소득층 보호, 상류 계층의 부정비리 척결
- ②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매춘여성의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필요
- ③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평등, 동일 임금 보장을 통해 여성의 성 산업으로의 유인 요인 방지
- ④공권력의 폭력 근절, 정당성, 도덕성 회복을 통해 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 조성에 공권력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 사회적 차원

- ①남녀 불평등구조 개선, 성역할을 유연화하는 성의 민주화운동 전개.
- ②가부장제 가족제도 개선, 가정의 민주화
- ③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양 대학 등을 신설. 확충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탈락 방지.

다. 문화적 차원

- ①도덕경 확립, 배금주의 타파, 인간존엄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 ②이기주의 타파, 공동체의식 함양
- ③이중적 성규범 타파. 이런 의미에서 매춘업소 출입 남성 명단 공개 등 남성의 외도문화에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고, 남녀에 같은 정조관념을 심는 것이 필요.
- ④외도, 매춘 이외의 다른 오락, 스포츠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함

라. 상호작용적 차원

①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 교육 참여, 가사노동 참여를 통해, ②메스 미디어, 상업제도, 교육제도 등에서는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의 감소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 지향

마. 사회통제의 차원

법적으로 피해여성보다 가해남성에게 유리한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 보완하여 튼튼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한다.

4. 성폭력 특별법의 골격 (성폭력 특별법개정 추진위원회)

첫째. 현재 형법 정조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에 관한 죄, 풍속을 해하는 죄 등과 특별법 아동복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산재되어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성폭력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특별법으로 묶는다.

둘째.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명시하며 과거 피해자의 성적 습관과는 관계없이 오직 당해 행위에 있어서 침해의 질과 양에 따라 가해자의 죄를 가린다.

셋째. 강제추행의 행위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

넷째. 형벌을 다양화하여 자격형을 신설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제도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한다. 절차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고소를 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게 하고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는 16세 이하의 증인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약식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여성이 긴급하게 신고와 구조를 요청하면 가해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강제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령처분제도를 신설하고 가정내 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김보은 사건 개요

1. 발생

지난 1월 17일 밤 9살이라는 어린나이부터 12년간 의붓 아버지 (김영오 53세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온 김보은 (천안 단국대 무용과 2년) 과 그의 친구 김진관 (천안 단국대 사회체육 2년) 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김보은에 대한 의붓 아버지 김영오의 성폭행 실상

가. 배경

1. 김보은이 7세때 (1977년도) 그 엄마가 김영오와 재혼

가족상황 : 김영오, 처, 김영오의 전처 자식 정식, 윤식 그리고 보은

2. 엄마는 미장원을 경영. 그로인해 가정교사를 집에 두었는데 가정교사 김모양을 성폭행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담배불로 온몸을 지져서 상당한 치료비를 엄마가 부담했고, 그후에도 다방종업원, 술집접대부, 김영오가 데려온 가정교사를 폭행하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엄마가 이를 무마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 많은 돈을 드렸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심했음.

3. 이러한 갈등이 생겨 서로 싸우게 될때부터 김영오는 이혼하자고 한다거나 보은이나 보은이 엄마가 도망을 가면, “정식이 윤식도 죽이고, 보은이와 엄마도 좇아가서 죽이고 친정 식구들도 죽이겠다” 며 늘 쥐약과 식칼을 준비했고, 칼을 가져오려면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정식은 칼을 감다 바쳐야하는 상황이었음. 그럴만큼, 김영오는 늘 술을 폭음하고 가족들이 자신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어긋나게, 심지어는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을 깨고 병이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고, 싸울 때는 이웃집에까지 들릴정도로 소리를 질러 가족들이 창피한 생각에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4. 이런 상황에서 보은이와 엄마는 개가를 해서 정식이 윤식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왜냐하면 그동안의 김영오의 행동을 보아서 충분히 죽이겠다는 말을 실천에 옮기고도 남을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보은이도 살리고 자신의 친정식구들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보은이를 희생시키고 살아왔음. 정식, 윤식도 친엄마와 헤어져 살면서 아버지의 난폭한 성격으로 인해 기를 펴지 못하고, 많이 맞고 살아온 불쌍한 처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늘 있었음.

5. 김영오가 전처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복잡한 여자문제와 폭행때문이었는데, 보은이 엄마가 재혼한후 전처가 찾아와 “당신도 나만큼 당해봐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며 자신의 담배불로 지진 자국, 물린 자국등의 상처를 보여준 일이 있었음.
6. 집안에서 김영오는 자신의 성미에 맞지 않으면 술을 마셨는데, 이 때도 어머니 보은이가 술을 주는대로 받아 마시지 않으면 술을 얼굴에 끼었고, 가슴에 들어부어 억지로라도 마셔야 했음.
7. 정식, 윤식, 보은의 통행금지시간은 6시. 그 시간을 넘기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보은이 엄마도 어디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지 못함.

나. 실상

1. 보은이가 9세때 김영오가 처음 성폭행. 같이 자자며 옷을 모두 벗겼고, 가슴이 없다며 따귀를 때렸고, 보은이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가 들어가자 입으로 빨게 함.
2. 국 5년때 (12세) 초경을 했는데 김영오는 보은이가 어른이 됐다며 기뻐했고 그 뒤부터 실제 성교를 했고, 거의 날마다 계속했으며 엄마, 정식, 윤식도 알게 됨.
3. 보은이가 중1때 (14세) 보은이의 언니 희은 (친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음. 당시 16세 가량) 이가 보은이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어가는데 보은, 김영오, 희은 이렇게 나란히 자는 중 김영오가 강제로 희은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보은이가 발견하고, 소란이 된 사실이 있음. 이 때 엄마는 김영오의 머리채를 잡으며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며 항의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함.
4. 희은이가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디자인 학원에 다닐 때 김영오의 집에 잠시 있었는데 늦게 귀가한다고 거의 날마다 트집이었고 남자 친구를 사귀다고 소동을 벌여 그날로 자취를 한다며 나갔음.
5. 안방에 침대를 놓고 살 때 침대위에서 김영오와 보은이가 자고 엄마는 바닥에서 잤음. 김영오는 목욕중에도 보은이가 들어와 씻겨주지 않으면 하지 않았고 생리중에도 막무가내였고, 목욕하면서도 성관계를 함. 응하지 않으면 목욕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폭행을 시작함. 김영오는 보은이와 엄마를 한 방에서 번갈아 성관계를 하기도 함. 김영오로부터 엄마와 보은이 모두 매독에 걸렸음. 보은이에게 성병중에도

관계 요구. 입으로 빨기를 요구.

보은이가 시험기간 중일때도 아랑곳 않고 성관계 요구. 대학입시 실기 시험 보는 기간에도 요구.

보은이의 가슴에도 물린자국 있음. 보은이의 질에 맥주병을 쑤셔 넣기도 함.

6. 생활을 늘 감시, 보은이의 대학교 시간표를 체크해서 그 시간이 끝나는데도 기영 오에게 달려가야 했고 그렇지 않거나 기숙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출근도 안 하고 학교로 달려와 대기해 있다가 데려 감.
방학때는 충주 관사에 갇혀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서울에도 못가고 살았는데 시외 전화한 것을 목록을 뽑아서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추궁하며 괴롭힘. 또 학교 선배에게 편지 쓴 것을 발견하고는 “이 년이 바람이 났다” 며 그 선배의 신상을 자세히 알아와 욕을 하며 괴롭힘 (이 때 심하게 때려 기숙사 생활 한동안 못함)
7. 김영오는 자신의 행동이 난폭하고 짐승같음을 아는 지 다른 가족이나 제 삼자에게 발설할까봐 가족들을 통제하고 늘 감시했음.
8. 보은이가 웃지 않거나 우울한 표정을 하면 웃지 않는다며 어떤 늑행이 생각하느냐고 우울하냐며 억지를 부리고 소란을 피움. 그래서 보은이는 항상 김영오의 무릎옆에 앉아서 웃어야 했음.
9. 김영오는 성관계를 하기전, 보은이의 가슴을 주무르며 괴롭혔고 “다 벗고 자라” 는 것이 늘 인사였음. 집에서 포르노 테이프를 보며 체위를 요구하였고 거부하면 구타했음.
일요일엔 하루에도 수차례 생각날 때마다 요구.

3. 보은과 진판의 관계

91년 3월부터 사귀기 시작.

91년 5월 자신의 처지가 진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보은은 11년간 근친강간 당해온 자신의 처지를 고백함.

진판은 보은의 고백을 통해서 보은을 이해하게 되었고 고백 후에도 보은에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6월에는 “보은이가 불쌍하다” 며 울면서 피를 토하기도 하였으며 항상 자신은 힘들고 피로울지라도 보은에게 힘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91년 8월부터는 보은의 처지를 종교로 풀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함.

4. 재판 (1심) 진행 과정

보은과 진판은 김영오를 죽인 후 진판의 부모님께 돌아갈 누가 걱정되어 강도로 위

장하였으나 보은이의 자백으로 곧 사실대로 밝혀짐.

1/9 구속

1/31 기소

3/13 1차 공판 (심리)

3/17 2차 공판 (심리)

3/28 3차 공판 (구형) —각각 12년 구형

4/4 4차 공판 (선고) —각각 4년, 7년 선고

*현재 항소심을 신청해 둔 상태 (5월 중하순 경으로 예상)

5. 최후 진술

김보은 최후 진술

결과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뒤에 큰 아버지, 고모님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빠, 윤식이기도 이해합니다. 오빠, 윤식이기도 참아가면서 사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군대가기 전에 죽은 누나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빠는 장남이라도 장가가면 아빠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뭘 믿고 모시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만 없으면 다 행복해 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맺었던 한과 응어리도 이 과정을 통해 다 풀어서 이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저 때문에 고통받는, 저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텐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관이를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관 최후 진술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절실히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스쳐버리고 도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보은이가 울면서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다.” 등의 그런 말들을 할 때면, 그의 눈물을 볼때면 보은이까지도 원망스럽고 힘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저 뿐인 그 앞에서 저는 제 힘겨운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어려워할 때 그것을 도와주어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제가 좋아하는 이가, 저를 좋아하는 이가 13년간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루살이같이 포기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왔는데, 정말이지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힘에 겨웠지만 그녀 앞에서는 항상 위로해주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나쁜 그가 그의 행동

을 누우치고 이제부터라도 보은이의 빼앗겼던 행복을 찾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인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날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자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았기에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칼을 준비했습니다. 보은이의 당하는 모습, 그 지겨운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갖고 내려갔던 칼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관사까지 갔고 아버지라는 자와 다 큰 딸이 한 이불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고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게같은 년이 바람이 나서—” 라는 말등을 들었을 때 그의 당당함에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짐승같은 인간이었던 그 이하였던 간에 제가 생명을 함부러 거두었다는 점에서 절실히 누우치고 있습니다.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부모님—건강하셨으면. .

마지막으로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보은이가 나가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은이가 미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 현행법이 빚은 희대의 비극, 김보은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가정내 성폭력을 방지할 수 없었던 현행 법률의 모순이 빚어낸 대표적인 비극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친족을 살해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해결책은 없었던가, 김보은양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성폭력 희생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유들을 이해하게 된다.

김영오의 변태적인 성폭행 실상, 그리고 그에 속수무책이었던 친어머니와 남자 형제 정식. 윤식을 보면 이 사건의 이면에는 현사회의 뒤틀린 권력구조, 가부장의 권위의식, 아내구타, 근친강간 등의 문제가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이 사건은, 성폭력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무엇인가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준다.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파발마 : 안녕하세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나온 민주정부 파발마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이 : 시간 없는데. . . . 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된다면 할 수 있어요. 뭔데요?

파발마 : 그러면 설문지 조사를 왜 하려 나왔는지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언제나 구호로만 외쳐대던 민주정부에 대해서 학우들과 함께 합의하는 민주정부의 내용을 내어 오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설문지를 보다가 이 내용은 이상하다 싶은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숙이 : 근데요. 민주정부, 민주정부 말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제가 4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요. 하지만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여성에게 좋아지는게 뭐가 있어요?

파발마 : 4학년이라고 하셨죠? 4학년이면 취직공부하느라 바쁘겠네요

영숙이 : 여자라서 취직이 될지 걱정이예요

파발마 : 혹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영숙이 : 들어 봤는데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니예요.

파발마 : 예, 이제껏 6공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국제적 걸치레용이라고 할수 있죠. 처음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건 87년도 대통령 선거때 표발을 겨냥한 선심용 입법이었죠. 가장 기뻐하는 성차별의 정의가 없고 남녀동일 임금규정이 빠지고 별칙규정도 졸속 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가 바로 민주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성별로 분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리고 현재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칙을 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정부가 민주정부 아니겠습니까?

영숙이 : ???

파발마 : 해해, 그럼 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몇시에 가시는데요.

영숙이 : 밤거리가 무서워서 늦게 까지 남아서 공부는 못해요. 특히 저희 집은 골목이 길거든요.

화발씨 : 예, 성폭력범죄는 5공화국 후반에 점차 줄어 들다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6공화국 들어서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6공 정부는 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을 하면서도 대책을 내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인신매매등 여성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폭력 특별법 제정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외에도 향락산업의 비대화를 막고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4천만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정부가 민주 정부가 아닐까요? 그 외에도 놀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탁아제도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수의 부족 재정 지원의 부족 탁아서비스질에 관한 문제 직장 탁아의 무제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탁아제도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현실적인 지원선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담을 대폭 늘리고 수익자 부담을 줄이며 부모의 소득여하에 따라 차등 보육료가 되어야 하며 영육아 보육법 또는 입법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립해야 될 정부가 바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이 : 아~, 민주정부라고 하는게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군요.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야 되겠네요.

화발씨 : 예,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비 민주적인 요소를 민주대개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없는 민주정부 수립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주정부의 상들을 다음에 만나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와!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여성에게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남녀가 평등한 평생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강화된다.
2. 탁아및 육아시설이 확충되며 여성의 취업이 보장된다.
3. 성폭력특별법, 유해노동, 인신매매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모성이 보호된다.
4.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된다.
5. 성차별없는 평등교육이 실시된다.

5월투쟁 일정

11일~18일; 이만학우와 함께하는 설문지 조사.

15일; 낮 12시-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초창 강연회

장소; 구학강당 강사님; 신 해수

오후 3시-민주정부 수립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에게

장소; 대강당 강사님; 노 무현

-강대여성 카로깅 배포

18일; 박 승희열사 추모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코스모스 집회

오후 3시 광주항쟁정신 계승및 5. 19총궐기를 위한 결의대회

19일; 민자당전당대회, 그러면 우리 이만학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일; 노래경연대회

21일; 대동제 설명회

22일; 반미의 날

24일; 영남지역 노동자결의대회

중요한 결의사항

광고투쟁

1개과 1유인물

7천 여학우의 5월

—이렇게 함께 합시다!

1. 5월이 왔다.

지난해 쇠파이프에, 화염에, 군홧발에 경대. 승희. 귀정이. 철수. 세용. 영균이 —그 귀한 아들 딸들을 잃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의 제사를 위해 준비를 해야만 하는 올해 5월이 왔다. 단지 5월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갈라지고 피멍든 이 땅의 우리들은 넘쳐나는 눈물과 분노에 어금니를 깨물고 있다. 살아서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그들이 왜 그리도 일찍 이 땅을 떠나야 했던가?

북현골 7천 여학우에게,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북현골 여학우들에게 이 오월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착한 승희 (91년 전남대 2. 여)가 불에 타 숨져가며 우리들에게 남긴 코스모스씨를 함께 뿌리며 아직 **“지금도 믿을 수가 없게,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날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하며 응석을 뱉 것같은데...**” 라며 가슴치시는 승희의 어머니—나의 어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고.

2. 5월 주본 하늘 아래 북현골 곳곳에서 각종 학회, 소모임, 학년별 총회. 과총회가 열리고 있다. 어떻게 함께 할까?

1) 먼저 기존 과총회의 이런 모습은 바꾸어 가자.

—매년 5월 비상총회를 예로.

하나, 5월이니까—어쨌든 뭔가 해보자라는 식으로 소수가 총회를 소집하고, 말 잘하는 한두 사람이 나서서 우리의 양심을 웅지 모르게 찢어대고 내가 뭘 할지, 왜 해야 하는지 충분한 공유없이 분위기 따라 수업거부에 손을 치켜들었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총회의 의의, 내용에 대한 공유, 토론이 없었다.

둘, 총회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 나는 이리저리 떠밀려서 “수업거부”에 동의하였다.

2) 올바른 총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 .

하나, 총회가 열릴 때까지 총회의 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유를 해내야 한다.

둘, 학우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토론이 되어야 한다.

셋, 과학생회 집행부만이 아니라 각종 학회, 소모임, 학년 총회에서 사전 논의를 해내고 이들이 함께 총회를 이끌어내야 한다.

네, 총회가 단순히 수업거부의 여부에만 집중되지 않고 총회에 온 모든 학우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담보해 낼수 있는 다양한 내용, 형태의 실천과제를 다짐해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

3) 올바른 과총회가 되기 위해서 7천 여학우는 특히 이렇게 하자.

한나, 적극적인-나도 꼭 한마디 내 의견을 말하겠다는 자세로 총회에 임하자. 여자가 어디 나서노?라는 인식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우리과, 우리 학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 동일한 책임으로써 당당하게 먼저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하자.

주유, 선배일수록 그리고 여학우일수록 총회및 과행사등에 무관심한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들하는데 오히려 더욱 과에 대한,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과총회에서부터 주인으로 서자.

3. 7월여학우 5월의 실천사항

1) 여성문제 연구모임 구성원이라면 ; 총선이후 민자당은 국민의 심판에는 아랑곳없이 대권다툼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바로 오는 5월 19일이 민자당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즈음에 여연에서는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올바른 여성정책-진정 여성을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 평등을 실현해 갈 민주정부의 상과 민주개혁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공부하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것을 우리끼리만 알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하기 위해 자보를 써보자. 그리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 단대, 과여학생회랑 힘을 합쳐서 플랭카드를 써보자. 우리가 바라는 민주개혁의 내용, 올바른 민주정부의 모습, 현 민자당 정권에게 하고픈 말, 그리고 이 5월에 친구, 후배,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자신의 결심등을 자보나 플랭카드에 써보도록 하자.

2) 어디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많다.

*친구들과 잔디밭에서나 찻집에서 얘기를 할 때 ; 우리들의 요즘 주된 대화의 소재는 무엇인가. 이 5월에는 온몸에 불을 붙이고 산하해 간 많은 열사들-승희, 영균이, 세용이, 철수, 김귀정. . . 나와 똑같은 대학생들인 그들이 왜 그렇게 분신, 투신해가야 했는지를 얘기해 보자.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며 대문을 잠그지 못하는 열사들의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이 땅의 모순이 나의 주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가벼워지는 얼마의 장바구니, 늘어만 가는 등록금, 그러나 여전히 흥미없는 수업, 부족한 교육 환경, 무서운 밤거리, 불투명한 취업문제. . . 나의 생활에서부터 이 사회의 모순을 짚어보고 대학생이란 사회적 위치속에서 건강한 대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친구, 후배, 선배들과 얘기해보자.

*자료집이 나온다는데,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던데 꼭 꼼꼼하게 읽어보자.

*과총회에 반드시 참여하자.

* (한겨레) 신문을 읽자. ; 정치 사회적인 무관심을 벗어보는 5월이 되자. 신문만이 아니라 뉴스, 학내 대자보, 자료집들을 관심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곧 경대 여성이 나온다는데 꼭 읽어보자.

*5월 15일 낮 12시 민주대개혁 10대 과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청강연회가 있다는데 반드시 찾아가보자.

*~~5월 18일에는 코스모스씨를 함께 뿌려보자.~~ 5월 19일은 승희가 분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둔 날이다. 승희가 남긴 코스모스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무리지어서만 피어나는 코스모스의 의미를 우리에게 남기고 간 승희의 죽음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보는 날이 되도록하자.

*대강당 앞 민주광장에는 복현골 학우들이 자주 모인다는데—특히 5월에는 —친구랑 선배랑 후배랑 손잡고 한번 가보자.

~~퀵 퀵 어학우와 함께하는 5월, 여성이 살맛나고
사립만이 거머쥔 민주정부 수립된다.~~

민주정부!